

대학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대학원 학칙」 제49조제3항에 의거, 각 대학원의 대학원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위원회는 각 대학원에 둔다.

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각 대학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전임 교원 중에서 각 대학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7명 이상(당연직 포함)의 교원으로 구성하고 각 대학원장은 위원장이 된다.

③ 당연직 위원 이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고,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회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
2.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3. 지도교수 변경에 관한 사항
4. 기타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「대학원 학칙」 제51조에서 대학원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학원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.

제6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「대학원 학칙」 제51조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